

# 다산 유보라 마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중요]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8월말 기준 공정률 72.02%) 아파트로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오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각 세대별로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이 선시공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33호 및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은 6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주택전시관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분양사무실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s-ubora.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

열리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청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청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설치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 발표일 2023.09.26.)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 체결
일정	2023년 9월 18일(월)	2023년 9월 19일(화)	2023년 9월 20일(수)	2023년 9월 26일(화)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7일(토)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2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10:00~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 유보라 마크뷰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li> </ul> </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재생과-14370호(2023.09.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133번지 외 38필지 (대지면적 : 3,755.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지상 33층, 2개동, 총 194세대 중 일반분양 166세대

[특별공급 79세대 (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29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445	01	047.9900A	47A	47.9900	21.5474	69.5374	46.0965	115.6339	14.0021	23	2	2	4	1	2	11	12	1
		02	047.9900B	47B	47.9900	21.5574	69.5474	46.0965	115.6439	14.0021	26	2	2	4	1	2	11	15	1
		03	059.9800A	59A	59.9800	26.7541	86.7341	57.6133	144.3474	17.5004	55	5	5	9	1	5	25	30	2
		04	059.7500B	59B	59.7500	26.4663	86.2163	57.3924	143.6087	17.4333	47	5	5	9	1	4	24	23	2
		05	067.9900	67	67.9900	28.4730	96.4630	65.3073	161.7703	19.8375	15	2	2	3	0	1	8	7	1
합 계											166	16	16	29	4	14	79	87	7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재생과-14086, 2023.09.01)에 따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비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택형	타입 (약식표기)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5%)	2차(15%)	3차(15%)	4차(15%)	
								계약시	2023-12-26	2024-02-26	2024-04-26	2024-06-26	입주지정일
047.9900A	47A	102동(1호)	3층	1	107,455,950	303,544,050	411,000,000	41,10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123,300,000
			4~5층	2	110,070,450	310,929,550	421,000,000	42,10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126,300,000
			6~9층	4	112,162,050	316,837,950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10~14층	5	113,207,850	319,792,150	433,000,000	43,30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129,900,000
			15~19층	5	113,992,200	322,007,800	436,000,000	43,6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30,800,000
			20~24층	5	115,299,450	325,700,550	441,000,000	44,10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132,300,000
			25층	1	116,083,800	327,916,200	444,000,000	44,4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33,200,000
047.9900B	47B	102동(2호)	3층	1	107,455,950	303,544,050	411,000,000	41,10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123,300,000
			4~5층	2	110,070,450	310,929,550	421,000,000	42,10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126,300,000
			6~9층	4	112,162,050	316,837,950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10~14층	5	113,207,850	319,792,150	433,000,000	43,30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129,900,000
			15~19층	5	113,992,200	322,007,800	436,000,000	43,6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30,800,000
			20~24층	5	115,299,450	325,700,550	441,000,000	44,10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132,300,000
			25~28층	4	116,083,800	327,916,200	444,000,000	44,4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33,200,000
059.9800A	59A	101동(1호)	3층	1	140,921,550	398,078,450	539,000,000	53,900,000	80,850,000	80,850,000	80,850,000	80,850,000	161,700,000
			4~5층	2	144,320,400	407,679,600	552,000,000	55,2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165,600,000
		102동(4호)	3층	1	143,536,050	405,463,950	549,000,000	54,900,000	82,350,000	82,350,000	82,350,000	82,350,000	164,700,000
			4~5층	2	146,934,900	415,065,100	562,000,000	56,2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168,600,000
		101동(1호) 102동(4호)	6~9층	8	149,549,400	422,450,600	572,000,000	57,2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171,600,000
			10~14층	10	151,118,100	426,881,900	578,000,000	57,8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173,400,000
			15~19층	8	152,163,900	429,836,100	582,000,000	58,2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174,600,000
			20~24층	10	153,732,600	434,267,400	588,000,000	58,8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176,400,000
			25~29층	9	155,039,850	437,960,150	593,000,000	59,300,000	88,950,000	88,950,000	88,950,000	88,950,000	177,900,000
			30층 이상	4	156,608,550	442,391,450	599,000,000	59,900,000	89,850,000	89,850,000	89,850,000	89,850,000	179,700,000
059.7500B	59B	101동(2호) 102동(3호)	3층	2	143,013,150	403,986,850	547,000,000	54,700,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82,050,000	164,100,000
			4~5층	4	146,412,000	413,588,000	560,000,000	56,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168,000,000
			6~9층	7	149,026,500	420,973,500	570,000,000	57,0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171,000,000
			10~13층	4	150,595,200	425,404,800	576,000,000	57,6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172,800,000
			15~19층	8	151,641,000	428,359,000	580,000,000	58,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174,000,000
			20~24층	9	153,209,700	432,790,300	586,000,000	58,6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175,800,000
			25~29층	9	154,516,950	436,483,050	591,000,000	59,10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177,300,000
			30층 이상	4	156,085,650	440,914,350	597,000,000	59,700,000	89,550,000	89,550,000	89,550,000	89,550,000	179,100,000
067.9900	67	101동(3호)	3층	1	167,589,450	473,410,550	641,000,000	64,100,000	96,150,000	96,150,000	96,150,000	96,150,000	192,300,000
			4~5층	2	171,511,200	484,488,800	656,000,000	65,6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196,800,000
			6층	1	177,001,650	499,998,350	677,000,000	67,700,000	101,550,000	101,550,000	101,550,000	101,550,000	203,100,000
			23~24층	2	182,230,650	514,769,350	697,000,000	69,700,000	104,550,000	104,550,000	104,550,000	104,550,000	209,100,000
			25~29층	5	183,537,900	518,462,100	702,000,000	70,2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210,600,000
			30층 이상	4	185,629,500	524,370,500	710,000,000	71,0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213,000,000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 상(청약 시) 주택형	047.9900A	047.9900B	059.9800A	059.7500B	067.9900
약식 표기	47A	47B	59A	59B	6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http://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형별, 층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23년 8월말 기준 공정을 72.02%)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선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23년 8월말 기준 공정을 72.02%)로 전 세대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이 선시공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연체로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 적용합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타입 (약식표기)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합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소계	경기도 (50%)	수도권 (서울, 인천) (50%)	소계				
					경기도								
47A	-	-	-	1	1	2	1	1	2	4	1	2	11
47B	-	-	-	1	1	2	1	1	2	4	1	2	11
59A	1	1	1	1	1	5	3	2	5	9	1	5	25
59B	1	1	1	1	1	5	3	2	5	9	1	4	24
67	-	-	-	1	1	2	1	1	2	3	-	1	8
합계	2	2	2	5	5	16	9	7	16	29	4	14	7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b>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b>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b>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32 1201 2089 1376"> <thead> <tr> <th data-bbox="232 1201 703 1263">구 분</th> <th data-bbox="703 1201 1173 1263">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173 1201 1630 1263">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30 1201 2089 1263">남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32 1263 703 1292">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03 1263 1173 1292">300만원</td> <td data-bbox="1173 1263 1630 1292">250만원</td> <td data-bbox="1630 1263 2089 1292">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32 1292 703 1320">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03 1292 1173 1320">600만원</td> <td data-bbox="1173 1292 1630 1320">400만원</td> <td data-bbox="1630 1292 2089 1320">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32 1320 703 1348">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03 1320 1173 1348">1,000만원</td> <td data-bbox="1173 1320 1630 1348">700만원</td> <td data-bbox="1630 1320 2089 1348">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32 1348 703 1376">모든 면적</td> <td data-bbox="703 1348 1173 1376">1,500만원</td> <td data-bbox="1173 1348 1630 1376">1,000만원</td> <td data-bbox="1630 1348 2089 1376">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 분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남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남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내 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li> <li>•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ul>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군경 포함) /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에 의거 입주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함)하고,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몰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 증명서 상 임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9.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 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 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9.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사전청약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li> </ul>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남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9.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3.09.19(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2순위	2023.09.20(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밀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마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b>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b>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b>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b>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b>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등분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b>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b>미혼으로 한정</b>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b>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b>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b>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이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우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합니다.</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기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총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li> <li>②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li> <li>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li> </ul> </li> <li>※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li> </ul>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li> <li>·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li> </ul>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본인의 변경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등을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09.26.(화)</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10.10.(화)~2023.10.12.(목) (10:00~16: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 유보라 마크뷰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9.26.(화) ~ 2023.10.5.(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9.2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당첨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3.10.02.(월) ~ 2023.10.07.(토) (6일간, 10:00 ~ 17:00)
제출처	• 「다산 유보라 마크뷰」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li>•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li> <li>•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li> <li>•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li> <li>•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li> </ul>

■ 표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및 단독세대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 출신명, 주민등록번호(배우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해외근우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업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으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li>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ul>

			전원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 참고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등재된 입양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일반공급 (가정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본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법인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③ ①, ② + 근로자인 경우 : ①, ② 해당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계속적인 프리랜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 전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신규 프리랜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또는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③ ①, ② 서류 제출시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필수(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신규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금년도 퇴직자인 경우	① 전년도 및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프리랜서	① 전년도 및 금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최근 근무지에 대한 해촉증명서(무직 증빙 서류)	① 세무서
	사업자를 폐지한 경우	① 폐업사실증명서, 부가세확정신고서(전년도 01. 01. ~ 입주자모집공고일) ② 전년도 소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소득이 없는 경우	①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 없음)	① 세무서/홈택스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지자체(읍면동)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또는 확인서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③ 근로자 해당 소득 서류	① 관할구역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감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또한 포함합니다.

■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동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추가	주거를 소유한 경우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주인센터
	추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인센터	
	추가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② 주인센터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인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인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3.10.10.(화) ~ 2023.10.12.(목) (3일간, 10:00 ~ 16:00)	다산 유보라 마크류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여권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인정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ds-ubora.com">http://ds-ubora.com</a> ) 양식 게시
	○		정부수입인지	본인	• 전자발급 시 종이문서용,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으로 발급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여권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인정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치 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51-1200-0978-73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반도건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계좌부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관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사전청약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1회부터 중도금4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신용보증수수료 포함)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최초 입주지정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4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운동시설, 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추가 설치 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통학구역은 미금초등학교와 동화중학교, 도농중학교, 미금중학교, 가온중학교 배치예정이며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개인지원입니다.(관계기관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설치 품목 계약

※ 본 아파트는 전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반드시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각 세대별로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이 전시공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반드시 추가설치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동	층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12-26	입주지정일
47A	102	3~8 / 15~20	9,300,000	930,000	930,000	7,440,000
		9~14 / 21~25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47B	102	3~8 / 15~20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9~14 / 21~28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59A	101	3~8 / 18~23	17,900,000	1,790,000	1,790,000	14,320,000
		9~11 / 15~17 / 24~26 / 30~33	17,400,000	1,740,000	1,740,000	13,920,000
		12~14 / 27~29	18,100,000	1,810,000	1,810,000	14,480,000
	102	6~11 / 21~23	17,900,000	1,790,000	1,790,000	14,320,000
		3~5 / 12~14 / 18~20 / 24~28	17,400,000	1,740,000	1,740,000	13,920,000
59B	101	15~17	18,100,000	1,810,000	1,810,000	14,480,000
		3~5 / 12~14 / 21~23 / 30~33	15,100,000	1,510,000	1,510,000	12,080,000
	102	6~11 / 15~20 / 24~29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6~11 / 15~20 / 24~28	15,100,000	1,510,000	1,510,000	12,080,000
		3~5 / 12~14 / 21~23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67	101	3~5 / 15~17 / 24~26	19,200,000	1,920,000	1,920,000	15,360,000
		6~8 / 12~14 / 21~23 / 27~33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동일 타입일지라도 층/구간별 발코니 확장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형별, 층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실내기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 및 철거(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를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으며, 이 면적은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에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에 초과 발코니 면적 중 비확장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및 외부 임면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에,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선 시공된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01-0335-1557-61	(주)반도건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금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에,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설치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제조사	설치 위치	설치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12-26	입주지정일

47A	LG전자	거실+침실1+침실2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47B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59A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59B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67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 모델명

구분	제조사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실외기
47A	LG	R-W05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PUQ0303S2R
47B		R-W05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PUQ0303S2R
59A		R-W0600C2SP	R-W03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PUQ0504S2R
59B		R-W0600C2SP	R-W03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PUQ0504S2R
67		R-W0600C2SP	R-W03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PUQ0504S2R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전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 위치는 계약체결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전면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은 실외기 기능외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피하여 하부층으로 이동하는 공간으로 경용하므로 내부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추가 설치 품목	농협은행	301-0335-1579-21	(주)반도건설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설치 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는 추가 설치 품목 대금 납부계좌로써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추가 설치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일정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설치 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설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설치 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중도금대출자서기간 등) 추가 설치 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시 계약한 추가설치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설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할수 없습니다.
- 추가 설치 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설치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설치 품목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47B, 59B, 67타입은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거실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TV),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 설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건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선 시공된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IX

###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공통 안내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14086, 2023.09.01일에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li> <li>-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한 타입이라 하더라도 층/구간별 서비스면적 및 발코니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실시계획인가 과정 또는 준공 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일부 탐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li> <li>-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운동시설, 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지하주차장, 각종 통신/설비/전기 배관 및 시설 등 공동주택(아파트)와 판매시설이 공유되는 공간, 장비 및 시설이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li> </ul> </li> <li>-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li> </ul>
--	--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a href="https://ds-ubora.com">https://ds-ubora.com</a>)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a href="https://ds-ubora.com">https://ds-ubora.com</a>)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상의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관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a href="https://ds-ubora.com">https://ds-ubora.com</a>)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 수준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양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제42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시행사)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주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철도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에 인접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부세대에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북측으로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고 단지와의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형성될 예정이며, 종류, 높이, 구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으로 35~56M 도로 및 주유소와 상업시설, 남양JIC, 단지 서측으로 28M도로 및 지하도로, 단지 북측으로 경의중앙선 선로, 동측으로 상업시설 등이 있으므로 이로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접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판매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동 지하 통신실 및 헬륨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전파상태,인허가,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li> <li>- 저층 세대는 판매시설의 옥상녹화로 인하여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북측 판매시설 옥상층과 101동 북측 2층 출입구 인근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권,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고가사다리차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PIT층 외부에 CCTV 설치가 계획되었으며,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배치 및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아파트, 판매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li> <li>-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여건상 단지 내,외부에 단차가 발생하며, 단지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형상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지상2층 외부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소음, 악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위치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내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지하 4개층이 조성이 되므로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총 287대)은 공동주택 주차장(249대)과 판매시설 주차장(38대)이 나뉘어 사용됩니다.</li> <li>- 102동 주변 지하1층 주차장은 판매시설 주차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02동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정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2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li> <li>*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li> <li>*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판매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li> <li>*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li> </ul> </li> <li>-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D/A(환기구), 가스배관 등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가스배관커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주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1·2호) 라인 지상1층 주변은 단지 주출입구, 101동 3호 라인 및 102동 1호 라인 지상1층 주변은 판매시설 출입구, 101동 1호 및 102동 2호 라인 지상2층은 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와 인접하여 소음, 매연, 빛 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2층에 운동시설, 102동 2층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회의실이 각각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1호와 102동 4호 라인 사이 휴게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소음 및 시야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1호 라인 주변에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소음 및 시야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동 지하층 및 지상층과 주변에 환풍 또는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li> <li>-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축리, 항공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축리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 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li>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67, 59B타입은 견본주택의 59A타입과 동등 수준의 마감재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및 상판의 길이와 폭,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47B타입은 견본주택의 47A 타입과 동등 수준의 마감재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및 상판의 길이와 폭,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형별 및 층별로 서비스(발코니) 및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한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li> <li>-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류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그릴창 부분에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실외기루버형 화재피난구)이 설치되고 해당층 및 아래층 개방 장치가 설치되고,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실외기루버형 화재피난구)의 작동을 위해 실외기를 넘어 대피할 수 있는 간이스다라기가 배치됩니다.</li> <li>-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실외기루버형 화재피난구)은 대피시에 개방 장치를 당기면 외부로 펼쳐지는 형식의 탈출형 피난시설로, 펼쳐진 후에 제품의 바닥에 있는 덮개를 개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실외기루버형 화재피난구)을 통해 하부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평상시 실외기루버, 비상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제품으로 입주 시 배포하는 책자를 통해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임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의 형상에 따라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건조기 등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견본주택에 지급품목으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한 시스템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기와 실외기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li> <li>- 우·배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우·배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실내기,빨래건조대, 조명기구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실외기실, 창고(67타입 해당)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ul>
창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손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창고(67타입 해당))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li> <li>-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을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 / 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3층, 4층, 최상층 세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배수 선출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인덕션 설치시 전기차단기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방 악세사리의 설치 위치 및 방법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 등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거실, 침실)용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보일러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평형 욕실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덕션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의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 기능으로 변경됩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li> </ul>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지상 2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지상 1~2층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2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101동,102동 인근 지상 2층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 판매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및 인근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관리사무소, 휴게쉼터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운동시설, 관리사무소, 휴게쉼터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2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가스배관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계획 (지하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1층 주차 통행로 2.7M, 지하2층(~지하4층) 차량통행로 2.3M, 각각 주차구획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함은 일부 동 지하층에 분산 배치예정이며, 배치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차량은 주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층으로 진입해야 합니다.</li> <li>-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li> <li>-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내 주차는 지하1층 ~ 지하4층으로 구성이 되며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공간은 지하1층에서 나누어지므로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102동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3층과 지하4층 주차장에 분산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식재,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li> </ul>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판매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li> <li>-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li> <li>-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저층부,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로고 등),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보일러배기구, 가스배관, 환기구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냄새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통신/ IoT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 홍보 내 표현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성능개선 또는 미구현 등으로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는 단지 입주 시작일 기준 4년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단지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할시 월 단위 과금 예정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바이비 서비스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li> <li>-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사(HTbeyond)의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서비스 운영사(HTbeyond)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유닛이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닛이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또는 전주 및 전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급기준 등에 의거하여 부지내 수도메타기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47A, 59A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차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li> <li>-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설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사이버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적용시 설계 도서에 준하여 적용될 계획이며,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면 및</li> <li>-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 별 동호라인의 조망 및 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 설치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운동시설, 휴게쉼터, 키즈스테이션,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보일러, 위생기기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li> </ul>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X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3,575,400,000	제 01292023-101-00047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당사가 본 아파트 “다산 유보라 마크뷰”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전기 / 통신 / 소방	구조
회사명	천마건축사사무소(주)	㈜케이아이기술단	㈜해밀이앤씨
감리금액(VAT포함)	1,422,254,000	547,360,000	45,98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반도건설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19번길 10, 401호(다산동, 신정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버허바빌딩)
법인등록번호	284171-0004687	180111-062431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https://ds-ubora.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
- 분양문의 ☎ 1533-166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